

충청북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내무위원회

1993. 8. 6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3년 7월 30일

· 회부일자 : 1993년 7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93회 임시회

· 제1차 내무위원회 (1993. 8. 6)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내무국장 조영창)

가. 제안이유

-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현행 조례에 의거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 동 임시조치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과세면제 근거규정이 없어 조세형평이 맞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골자

-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주민을 면제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윤 태 무)

충청북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정된 주거환경개선 지구내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자인 시장이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 받고 있으나,

주민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과세 면제의 근거규정이 없어 동종의 사업시행을 하면서도 과세를 면제받지 못하고 있는등 조례의 형평이 맞지 않고 있어 이를 보완하여 주민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그 주민을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 론 요 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 사 결 과 : 도 원안대로 의결 (참석 7인, 찬성 7인)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신구조문 대비표